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9
----------	------

제출연월일: 2020. 12. 3.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 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과의 용어 일치 및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정비사항 반영 등을 위해 조문을 정비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과의 용어 일치(안 제2조 등)
  - 쓰레기봉투 → 종량제봉투
- 나.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정비사항 반영(안 제21조)
  - 철회 → 취소
-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큰 따옴표 표시 변경

### 3.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등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없음(여성가족과-13999호, 2020. 10. 26.)
- 라. 입법예고: 2020. 10. 26. ~ 11. 16.(21일간) / 의견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물”을 “물”로, “법”을 “법”으로, “쓰레기”를 “쓰레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물”을 “물”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물”을 “물”로, “쓰레기종량제”를 “종량제”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물”을 “물”로, “별표6”을 “별표 6”으로, “장”을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설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거”를 “거”로, “배출해놓으면”을 “배출해 놓으면”으로, “자”를 “자”로, 같은 조 제8호 중 “대행”을 “대행”으로 한다.

제4조 중 “유지하고,폐기물”을 “유지하고, 폐기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장소등”을 “기간·장소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6”을 “별표 6”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거장소등”을 “수거장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는 5톤”을 “종량제봉투에는 5톤”으로, “쓰레기봉투에 담”을 “종량제봉투에 담”으로,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을 “종량제봉투에는 가로변”

으로 한다.

-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제14조의 제목“(쓰레기봉투의 제작)”을“(종량제봉투의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2”를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을“(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 ①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종량제봉투 공급·판매가격에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쓰레기봉투에”를 “종량제봉투에”로,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를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로,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는”을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별표 3”을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을“(종량제봉투 공급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위탁”을 “종량제봉투위탁”으로, “쓰레기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종량제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쓰레기봉투 대금지원)”을“(종량제봉투 대금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쓰레기봉투의”를 “종량제봉투의”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종량제봉투판매업”으로, “자 에”를 “자에”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없게된”을 “없게 된”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판매소의 신고사항 철회)”를 “(판매소의 신고사항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회”를 “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위·변조”를 “위조·변조”로, 같은 호 및 제6호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쓰레기봉투제작업자”를 각각 “종량제봉투제작업자”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량제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제13조제2항)**

봉투용량	용도	색상	재질
5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10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20ℓ	재사용		
50ℓ	일반용	녹색 ※ 공공용-청색	
100ℓ	일반용		
3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녹색	폴리프로필렌
5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별표 2]

**중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4항)**

1. 중량제봉투의 크기

용량(ℓ)	규격(가로cm×세로cm)	비고
5	26×46.5	
10	33×56.5	
20	42×69.5	
30	48×78.5	
50	56×91.5	
100	71×113.5	

(주) 중량제봉투의 높이치수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가로길이 /π+ 5cm)과 접합가공치수를 합한 것이다.

2. 문장(전면)

○ 일반용 종량제봉투

묶음선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종량제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 공공용 종량제봉투

묶음선
공공용 종량제봉투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 봉투는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묶음선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용(용량)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배출 후 수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고문안(전면)

중량제봉투 크기 범위내 적정 규모  
(공 익 광 고)

[별표 3]

중량제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5조제1항)

(단위: 원/장)

구분	일반용					특수규격	
용량(ℓ)	5	10	20	50	100	30	50
공급액	146	282	546	1,356	2,694	1,966	3,167
판매수수료	14	28	54	134	266	194	313
판매가격	160	310	600	1,490	2,960	2,160	3,48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 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가정이외의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따른 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물”----- ----- “법”----- ----- ----- “쓰레기”----- ----- -----.</p> <p>2.-----물”----- ----- ----- ----- “사업장----- ----- ----- -----.</p>



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 배출해놓으면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직접 상차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략)

8. “대행“이라 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제8조의1에서 규정한 대행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배출해 놓으면 ----  
-----  
-----자-----  
-----  
-----.

7. (현행과 같음)

8. “대행”-----  
-----  
-----  
-----  
-----.

제4조(구민의 책무) -----  
----- 유지  
하고, 폐기물-----  
-----  
-----  
-----.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 호-----.

1. ~ 4. (생 략)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  
-----  
-----  
-----.

③ -----  
-----  
-----  
기간·장소 등 -----  
-----  
-----  
-----.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  
-----  
----- 중량제봉투-----  
-----  
-----.

한다.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1항에 따라 배출하지 못하는 대형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② ----- 별표 6-----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  
-----  
----- 수거장소 등-----  
-----  
-----  
-----  
-----.

② 제9조제1항-----  
-----  
-----  
-----  
-----  
-----  
-----  
-----.



한다.

- ②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별표1과 같다.
- ③ 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특수규격 쓰레기봉투에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 ② 쓰레기봉투 제작 시 인쇄문구는 자치단체명, 봉투용량·재질·용도·사용법, 홍보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이사 등으로 인한 반품 방법 등을 간결하게 표기할 수 있다.
- ③ 삭 제
- ④ 제13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2와 같다.

한다.

- ② 종량제봉투-----별표 1-----.
- ③ -----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는 5톤 -----  
----- 종량제봉투에 담-----  
----- 종량제봉투에는 가로변-----  
-----.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

- ② 종량제봉투 -----  
-----  
-----  
-----  
-----  
-----.
- ④ -----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2-----.

⑤ 쓰레기봉투의 두께·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 고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3의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에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

⑤ 종량제봉투-----  
-----  
-----  
-----.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종량제봉투 공급·판매가격에서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  
--- 종량제봉투 -----  
-----.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  
-----  
-----  
-----  
-----.

1. ----- 종량제봉



“공급업자”라 한다) 및 대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쓰레기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쓰레기봉투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의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의 납기 및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대금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명당 월60리터 기준량의 쓰레기봉투 대금 또는 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9조(판매소의 신고)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생략)

-----  
----- 종량제봉투량의 공급대  
금을 종량제봉투 -----  
-----  
-----.

② -----  
----- 종량제봉투 -----  
-----  
-----.

제18조(종량제봉투 대금지원) --  
-----  
----- 종량  
제봉투 -----  
-----.

1. 2. (현행과 같음)

제19조(판매소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종량제봉투의 -----  
-----  
-----  
----- 종량  
제봉투판매업----- 자  
에 -----  
-----.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현

략)

② 판매자는 구청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생략)

제21조(판매소의 신고사항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신고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3. (생략)

4.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신고를 한 자가 영업장소를 무단 이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5. 위·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행과 같음)

② -----  
--- 종량제봉투-----  
---. -----  
-----  
-----.

1. -----  
----- 없게 된 -----  
-----

2. (현행과 같음)

제21조(판매소의 신고사항 취소)

-----  
-----  
----- 취소-----  
-----.

1. -----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

2.·3. (현행과 같음)

4. -----  
-----  
----- 종량제봉투-----  
-----

5. 위조·변조 -----  
-- 종량제봉투-----  
-----



현행	개정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b> (제13조제2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봉투용량</th> <th>용도</th> <th>색상</th> <th>재질</th> </tr> </thead> <tbody> <tr> <td>5ℓ</td> <td>재사용</td> <td>흰색 (반투명)</td> <td rowspan="3">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td> </tr> <tr> <td>10ℓ</td> <td>재사용</td> <td rowspan="2">흰색 (반투명)</td> </tr> <tr> <td>20ℓ</td> <td>재사용</td> </tr> <tr> <td>50ℓ</td> <td>일반용</td> <td rowspan="2">녹색 ※공공용-청색</td> <td rowspan="2">폴리프로필렌</td> </tr> <tr> <td>100ℓ</td> <td>일반용</td> </tr> <tr> <td>30ℓ</td> <td>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td> <td rowspan="2">녹색</td> <td rowspan="2">폴리프로필렌</td> </tr> <tr> <td>50ℓ</td> <td>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td> </tr> </tbody> </table>	봉투용량	용도	색상	재질	5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10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20ℓ	재사용	50ℓ	일반용	녹색 ※공공용-청색	폴리프로필렌	100ℓ	일반용	3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녹색	폴리프로필렌	5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b>종량제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b> (제13조제2항)</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봉투용량</th> <th>용도</th> <th>색상</th> <th>재질</th> </tr> </thead> <tbody> <tr> <td>5ℓ</td> <td>재사용</td> <td>흰색 (반투명)</td> <td rowspan="3">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td> </tr> <tr> <td>10ℓ</td> <td>재사용</td> <td rowspan="2">흰색 (반투명)</td> </tr> <tr> <td>20ℓ</td> <td>재사용</td> </tr> <tr> <td>50ℓ</td> <td>일반용</td> <td rowspan="2">녹색 ※공공용-청색</td> <td rowspan="2">폴리프로필렌</td> </tr> <tr> <td>100ℓ</td> <td>일반용</td> </tr> <tr> <td>30ℓ</td> <td>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td> <td rowspan="2">녹색</td> <td rowspan="2">폴리프로필렌</td> </tr> <tr> <td>50ℓ</td> <td>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td> </tr> </tbody> </table>	봉투용량	용도	색상	재질	5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10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20ℓ	재사용	50ℓ	일반용	녹색 ※공공용-청색	폴리프로필렌	100ℓ	일반용	3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녹색	폴리프로필렌	5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용량	용도	색상	재질																																																
5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10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20ℓ	재사용																																																		
50ℓ	일반용	녹색 ※공공용-청색	폴리프로필렌																																																
100ℓ	일반용																																																		
3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녹색	폴리프로필렌																																																
5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용량	용도	색상	재질																																																
5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10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20ℓ	재사용																																																		
50ℓ	일반용	녹색 ※공공용-청색	폴리프로필렌																																																
100ℓ	일반용																																																		
3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녹색	폴리프로필렌																																																
50ℓ	특수규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4항)</b></p> <p>1. <b>쓰레기봉투의 크기</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용량(ℓ)</th> <th>규격(가로cm×세로cm)</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5</td><td>26×46.5</td><td></td></tr> <tr><td>10</td><td>33×56.5</td><td></td></tr> <tr><td>20</td><td>42×69.5</td><td></td></tr> <tr><td>30</td><td>48×78.5</td><td></td></tr> <tr><td>50</td><td>56×91.5</td><td></td></tr> <tr><td>100</td><td>71×113.5</td><td></td></tr> </tbody> </table> <p>(주) <b>쓰레기</b>봉투의 높이치수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가로길이/π+ 5cm)과 접합가공치수를 합한 것이다.</p>	용량(ℓ)	규격(가로cm×세로cm)	비고	5	26×46.5		10	33×56.5		20	42×69.5		30	48×78.5		50	56×91.5		100	71×113.5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4항)</b></p> <p>1. <b>종량제봉투의 크기</b></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용량(ℓ)</th> <th>규격(가로cm×세로cm)</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5</td><td>26×46.5</td><td></td></tr> <tr><td>10</td><td>33×56.5</td><td></td></tr> <tr><td>20</td><td>42×69.5</td><td></td></tr> <tr><td>30</td><td>48×78.5</td><td></td></tr> <tr><td>50</td><td>56×91.5</td><td></td></tr> <tr><td>100</td><td>71×113.5</td><td></td></tr> </tbody> </table> <p>(주) <b>종량제</b>봉투의 높이치수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가로길이/π+ 5cm)과 접합가공치수를 합한 것이다.</p>	용량(ℓ)	규격(가로cm×세로cm)	비고	5	26×46.5		10	33×56.5		20	42×69.5		30	48×78.5		50	56×91.5		100	71×113.5									
용량(ℓ)	규격(가로cm×세로cm)	비고																																																	
5	26×46.5																																																		
10	33×56.5																																																		
20	42×69.5																																																		
30	48×78.5																																																		
50	56×91.5																																																		
100	71×113.5																																																		
용량(ℓ)	규격(가로cm×세로cm)	비고																																																	
5	26×46.5																																																		
10	33×56.5																																																		
20	42×69.5																																																		
30	48×78.5																																																		
50	56×91.5																																																		
100	71×113.5																																																		

<p>2. 문장(전면)</p> <p>○ 일반용 <b>쓰레기</b>봉투      ○ 공공용 <b>쓰레기</b>봉투</p> <table border="1" data-bbox="135 324 774 873">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묶음선</td> <td style="text-align: center;">묶음선</td> </tr> <tr> <td>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b>쓰레기</b>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td> <td>                     공공용 <b>쓰레기</b>봉투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 봉투는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d> </tr> </table> <p>○ 특수규격 <b>쓰레기</b>봉투</p> <table border="1" data-bbox="135 952 454 1534">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묶음선</td> </tr> <tr> <td>                     특수규격 <b>쓰레기</b>봉투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용(용량)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td> </tr> <tr> <td>                     배출 후 수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 </tr> </table> <p>3. 광고문안(전면)</p> <table border="1" data-bbox="135 1702 742 1904">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쓰레기</b>봉투 크기 범위내 적정 규모                      (공 익 광 고)                 </td> </tr> </table>	묶음선	묶음선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b>쓰레기</b> 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공공용 <b>쓰레기</b> 봉투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 봉투는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묶음선	특수규격 <b>쓰레기</b> 봉투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용(용량)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배출 후 수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쓰레기</b> 봉투 크기 범위내 적정 규모 (공 익 광 고)	<p>2. 문장(전면)</p> <p>○ 일반용 <b>종량제</b>봉투      ○ 공공용 <b>종량제</b>봉투</p> <table border="1" data-bbox="805 324 1460 873">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묶음선</td> <td style="text-align: center;">묶음선</td> </tr> <tr> <td>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b>종량제</b>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td> <td>                     공공용 <b>종량제</b>봉투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 봉투는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d> </tr> </table> <p>○ 특수규격 <b>종량제</b>봉투</p> <table border="1" data-bbox="805 952 1125 1534">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묶음선</td> </tr> <tr> <td>                     특수규격 <b>종량제</b>봉투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용(용량)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td> </tr> <tr> <td>                     배출 후 수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 </tr> </table> <p>3. 광고문안(전면)</p> <table border="1" data-bbox="805 1702 1412 1904">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종량제</b>봉투 크기 범위내 적정 규모                      (공 익 광 고)                 </td> </tr> </table>	묶음선	묶음선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b>종량제</b> 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공공용 <b>종량제</b> 봉투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 봉투는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묶음선	특수규격 <b>종량제</b> 봉투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용(용량)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배출 후 수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종량제</b> 봉투 크기 범위내 적정 규모 (공 익 광 고)
묶음선	묶음선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b>쓰레기</b> 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공공용 <b>쓰레기</b> 봉투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 봉투는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묶음선																	
특수규격 <b>쓰레기</b> 봉투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용(용량)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배출 후 수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쓰레기</b> 봉투 크기 범위내 적정 규모 (공 익 광 고)																	
묶음선	묶음선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b>종량제</b> 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공공용 <b>종량제</b> 봉투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 봉투는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묶음선																	
특수규격 <b>종량제</b> 봉투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용(용량)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배출 후 수거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종량제</b> 봉투 크기 범위내 적정 규모 (공 익 광 고)																	

[별표 3]

**쓰레기 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제15조제1항)

(단위: 원/장)

구분	일반용					특수규격		
	용량(ℓ)	5	10	20	50	100	30	50
공급액	146	282	546	1,356	2,694	1,966	3,167	
판매수수료	14	28	54	134	266	194	313	
판매가격	160	310	600	1,490	2,960	2,160	3,480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제15조제1항)

(단위: 원/장)

구분	일반용					특수규격		
	용량(ℓ)	5	10	20	50	100	30	50
공급액	146	282	546	1,356	2,694	1,966	3,167	
판매수수료	14	28	54	134	266	194	313	
판매가격	160	310	600	1,490	2,960	2,160	3,480	

## 근 거 법 규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

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총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 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변경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 3. 작성자

- 소 속: 환경미화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한 결
- 연락처: (052)290-3763